

2019학년도 한서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한 서 대 학 교

- 목 차 -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	1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문항 -----	1
I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2
IV.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4
V.	문항 분석 결과 -----	5
VI.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6
VII.	부록 -----	7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목적

우리 대학교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선행학습을 유발 요인은 없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토록 하려함.

2.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문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면접고사	학생부 종합	전계열													○
	재외국민	전계열													○

Ⅲ.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결과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규정」 - 첨부 참조

3.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1)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위원회)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
- 2) 외부위원 3명중 2명은 현직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1명은 학부모로 구성

직책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관리처장	정○○	입학관리처장
위원	내부위원	무인항공기학과	이○○	교수
		항공관광학과	박○○	교수
	외부위원	신평고등학교	이○○	교사
		연수여자고등학교	김○○	교사
		학부모	조○○	

3) 기능과 역할

가) 우리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의 문항 분석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

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없었는지 평가

다)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세부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위원 구성 및 위촉	2019년 3월 14일(목)	
영향평가 위원회 개최 및 자료배포	2019년 3월 15일(금)	
영향평가 실시	2019년 3월 18일(월) ~ 3월 27일(수)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2019년 3월 28일(목)	
홈페이지 공지	2019년 3월 29일(금) 이전	

IV.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별 고사 현황

고사 유형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학생부종합유형 (면접)	0	
실기위주유형 (실기)	x	예·체능 분야 실기고사

※ 실기위주 일반전형 경호비서학과는 면접고사 시행

2. 면접고사

1) 면접형태

- 우리 대학교의 면접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확인하고, 인성면접 형태로 진행하여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음.**

2) 면접고사 활용자료 및 면접기준

활용자료	면접기준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비교과를 활용한 발전가능성을 평가 · 자기주도성과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평가 · 도덕성, 사회성 등에 대한 인성 평가 	

- 3) 인성면접은 인성문제출제위원회를 통해 출제, 인성면접 예상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험생이 사전에 면접문항을 준비할 수 있게 함.
- 4) 우리 대학교의 면접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확인하여 면접문항을 출제하며, 인성평가는 기 공개된 문항으로 진행되는 바, 우리 대학교의 전형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V.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불일 번호
면접고사	학생부 종합	전계열				해당없음	
	재외국민	전계열				해당없음	

※ 면접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확인하고, 인성면접 형태로 진행.

2. 인성면접 문항 및 평가기준

- ① 자신의 특기, 취미,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아울러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 평가기준 : 열정, 성실성과 자기표현 능력
- ② 신입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평가기준 : 성취지향성, 주도성, 사회성
- ③ 20대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 평가기준 : 미래에 대한 직업 동향, 걱정 등의 평가 / 합리적 근거에 대한 걱정성 제시 능력 평가
- ④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 평가기준 : 주도성, 성취 지향적 문제해결능력
- ⑤ 친구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 평가기준 :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자기표현 능력
- ⑥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낮은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 평가기준 : 자기반성과 미래 지향적 해결 능력 / 객관적 사고에 의한 표현 능력

VI.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2019학년도 우리 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시행한 면접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확인과 인성문항을 통하여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었다고 평가함.

2) 2020학년도 면접고사도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 인성 평가 형태를 유지할 계획임. 이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문제 출제위원 및 면접 평가위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면접고사가 고교 선행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Ⅶ. 부록

[첨부]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규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연구하기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관리처장이 된다.
- ② 위원은 고교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교사, 학부모와 총장이 위촉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면접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③ 면접고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면접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연구위원)

- ①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전항의 연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연구·조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전형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와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